

[별지 제20호서식의(가)] 삭제 <2010.1.25>

[별지 제20호서식의(나)] <개정 2005.8.4>

인증 제 호

광고게재의 인증

정당명 또는 후보자성명

위의 (정당)·(후보자)는 년 월 일 실시하는 ○○선거에 있어서
(「공직선거법」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신문광고)·(「공직선거법」 제137조의
규정에 의한 정당·정책등의 광고)를 할 수 있음을 인증합니다.

※ 이 인증서 1매로 1(일간신문)·(일간신문등)에 1회의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○○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